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3780	홈페이지	www.bestfnb.co.kr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11.0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11.22.	대표 이메일	goodfair365@naver.com

[치킨일레븐] 정 보 공 개 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01 . .

주식회사 베스트에프엔비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치킨일레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1503호(가산동)
대표 전화번호(가맹문의)	02-858-1402
대표 팩스번호	02-858-1403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채인사업팀 / 02-858-1406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내역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의 연혁
3. 가맹사업의 업종
4.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기타 가맹사업현황
7. 바로 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의 일반 현황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 목 차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보호
5.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 가맹사업 (주)베스트에프앤비 “치킨일레븐”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 당사와 “치킨일레븐”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주)베스트에프앤비	치킨일레븐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 1503호(가산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1. 10. 14.	2021. 10. 18.	홍창기	02-856-1402	02-856-1403
	법인등록번호	110111-8053970	사업자등록번호	853 - 86 - 02347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 호 / 이 름		대 표 자	대 표 번 호
가 맹 본 부	(주) 베스트에프앤비		홍 창 기	02-856-1402
특 수 관 계 인 (임 원)	홍 창 기	영 업 표 지	사 업 장 주 소	
		치킨일레븐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0,1503호	
특 수 관 계 인 (부)	홍 병 열	(주)제일좋은전람 [전시사업109-86-30028]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0 에이스하이엔드타워 10차 1503호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여부내역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3 개년간 다른 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후 영위할 “치킨일레븐”의 명칭·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랜드 명	상 호	표 관 련 정보	BI
치킨일레븐	(주)베스트에프앤비 [0000점]	출원 [21.10.25] (4020210215543/ /43류)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 지역명 표기)		



5. 가맹본부의 바로 전 3 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년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	-	-	-	-	-
2022 년	-	-	-	-	-	-
2023 년	-	-	-	5,000	-	-

※ 당사는 2023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음 ※

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 개년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가. 의 현황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성 명	직위	개인별 사업경력		
			사업기간	사업내용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홍창기	대표	2021.10.18~현재	(주)베스트에프앤비 대표이사	회사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임원	홍병열	감사	2021.10.18~현재	(주)베스트에프앤비 감사	가맹점사업(관리)

7. 바로 전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 준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1	1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치킨일레븐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치킨일레븐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견본이미지	출원 및 등록 일자	출원 및 등록 번호	소유자	존속기간 만료일
상표 / 서비스표		출원일: 2021.10.25. 등록일: 2023.07.24	(출원번호) 40-2021-0215543 (등록번호) 40-2057095	(주)베스트에프앤비	2033. 07.24
권리 범위	가맹점 상호로 사용				

※ 현재 출원중으로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함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치킨일레븐을 시작한 날 : 해당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 미개점 상태임)

2. 치킨일레븐의 연혁

치킨일레븐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베스트에프엔비	치킨일레븐	홍창기	2021.10.18~현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30,1503호(가산동)

3. 치킨일레븐의 업종

영업표지	업 종	
치킨일레븐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서비스업(치킨)	프랜차이즈(치킨, 호프)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중인 치킨일레븐 가맹점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치킨일레븐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 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0	0	0	0	0	0	0	0	0
서울	0	0	0	0	0	0	0	0	0
부산	0	0	0	0	0	0	0	0	0
대구	0	0	0	0	0	0	0	0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0	0	0	0	0	0	0	0	0
경기	0	0	0	0	0	0	0	0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0	0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0	0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0	0	0	0	0	0	0	0	0

※ 기맹사업 시작으로 “해당사항 없음”

5.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치킨일레븐 변동 현황

치킨일레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바로 전 3년간 신규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변경한 가맹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시점	연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21 년	-	-	-	-	-	-
2022 년	-	-	-	-	-	-
2023 년	-	-	-	-	-	-

※ 기맹사업 시작으로 “해당사항 없음”

6. 치킨일레븐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현황

치킨일레븐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바로 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지역	2023 년말 가맹점 수	2023 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단위: 천원, VAT 미포함)						산 출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매출액	면적 3.3 ㎡당	최고 매출액		최저 매출액		
				매출액	면적 3.3 ㎡당	매출액	면적 3.3 ㎡당	
전체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서울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부산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대구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인천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광주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대전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울산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세종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경기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강원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충북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충남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전북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전남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경북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경남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제주	0	추정 근거자료가 없음(5곳미만)						0

※ 기맹사업 시작으로 “해당사항 없음”

8. 치킨일레븐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치킨일레븐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0	0

※ 기맹사업 시작으로 “해당사항 없음”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 의 일반 정보

치킨일레븐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현황은 가맹시작 시작으로 “해당사항 없음”

10. 바로 전 사업연도의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도에 치킨일레븐과 관련하여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가맹시작 시작으로 “해당사항 없음”

11. 가맹점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중소기업은행	기업지원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02-2027-2851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 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라.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 제도는 “해당사항 없음”

Ⅲ.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치킨일레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최초 가맹금

구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 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보증금	-	-	-
기타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VAT포함)

구분	내역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1. 가입비 2.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정보, 자료제공 대가 3. 최초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5,5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1인)	2,2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로봇기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포함 (라이선스 소유권)	58,300	설치 후 7일 이전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계약시 설치 로봇에 대한 라이선스 소유권을 이관하였기에 임의적인 해체 불가능

2) 귀하(신규 가입자_양도양수시)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 가맹비	1. 양수 가맹점 운영을 위한 정보, 자료제공 대가 2. 양수 가맹점 오픈을 위한 인력지원의 대가	2,2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가맹점 영업시작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교육비	양수 개점 교육비	1,1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로봇기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포함 (라이선스 소유권)	58,300	설치 후 7일 이전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시 위약금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계약시 설치 로봇에 대한 라이선스 소유권을 이관하였기에 임의적인 해체 불가능

나. 보증금

귀하 (가맹점 양수자 포함) 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다. 예치 가맹금의 범위와 금액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액(단위:원/VAT 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 계	7,700,000	3,300,000
가맹비	5,500,000	2,200,000
교육비	2,200,000	1,100,000

라.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치킨일레븐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기준평수: 15평, 기준면적: 49.5㎡ / 단위:원/ VAT포함)

품목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인테리어	협력업체	22,500,000	1,500,000	가맹계약시 개별계약	소요비용 제외 후 반환
간판 및 사인물	협력업체	5,500,000	366,660		
주방기기 및 용품	협력업체	9,900,000	660,000		
의탁자(4 조) 외	협력업체	4,400,000	293,330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6,930,000	462,000		
초도물품	가맹본부	4,000,000	266,660		
합계		53,230,000	3,548,660		
가맹점사업자 직접시공 및 물품구입시 검수비: 3.3㎡당 220,000원(VAT포함)					

- ① 위 표의 면적 3.3㎡당 금액은 기준면적을 3.3㎡로 나눈 금액에 불과하며, 기준면적 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정률로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 들지 않습니다.
- 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49.5㎡, 15평 기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③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외부데크, 외부틀 및 폴딩도어, 간판 실사시트, 의탁자, POS기기,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④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⑤ 검수비 산정 시 10평 미만은 10평으로 간주됩니다.

마.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치킨일레븐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선정의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체인사업팀 (창업자 의뢰시)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사.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귀하는 지정된 전용상품(원부재료)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 * 귀하는 지정된 원부재료 품목의 스펙 및 레시피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VAT 포함)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비 고	
					신규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예치 가맹금	7,700	총액의 50%	-	50%		3,300(일시불)
중도금		계약일		계약일+15일	-	
잔 금				교육시작 7일 이전	-	계약 체결시

- *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상표사용료, 광고분담금, 교육훈련비, 점포환경개선비용 등)

구 분	내 역	지급 대상자	금액(단위: 원/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지급 기한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가맹본부	월 220,000 원	매월 15일	후불로 반환 안됨
개점 이후 교육비	수시교육	가맹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개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특별교육	가맹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	가맹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30%, 가맹점사업자측 7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POS 사용료	POS 사용대가	협력업체	월 33,000 원		후불로 반환 안됨
점포 환경 개선 비용	간판교체, 인테리어 (장비, 집기의 교체비용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협력업체 (미정)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가맹본부 분담비용 40%를 제외한 나머지	개별 청구	Ⅶ-1 참조
지연 이자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 경과시 지연이자	가맹본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금전지급의무 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기맹사업 시작으로 “해당사항 없음”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 POS, ERP시스템, 회계장부(이하 '회계자료'라 한다)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자료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귀하의 점포의 전산 매출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에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치킨일레븐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 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을”은 “갑”에게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기타 표시물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전화번호 등록(114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등)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한다. 이 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을”이 부담한다.
- ② “을”은 “갑”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변형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서비스표권)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을”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갑”이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의 영업자료, 운영 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을”은 협력업체로부터 지원받은 기기 등을 임의 철거를 하지 못하며 지원받은 품목을 반환해야 한다.
- ⑤ “갑”과 “을”은 계약 해지 등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을”이 예치한 이행 보증금과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나머지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개시된다.
- ⑥ “을”은 “갑”과 그 거래회사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을 계약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 또는 그 거래회사에 대하여 지불해야 한다.
- ⑦ “을”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갑”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⑧ “을”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 종료시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손해배상금으로 1일당 금일십만원정(₩100,000)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⑨ “갑”은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가. 귀하가 치킨일레븐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천원/VAT포함)

※ “해당사항 없음” ※

※ 당사의 경우 신선육제품은 상·하한을 구분할 수 없게 변동가로 등록이 되어 있어 평균가로 상하한을 정하였으며, 그 외 품목은 고정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치킨일레븐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특수관계인 및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실이 없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치킨일레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당사는 치킨일레븐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별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치킨일레븐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치킨일레븐” 가공, 혼합된 과정을 거친 치킨류 소스, 파우더 및 로봇기기를 통한 당사의 메뉴상 항목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 회 서면시정 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정한 메뉴 이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시장변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해야 합니다.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 또는 알선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로봇을 활용한 계육(치킨), 주류등을 직접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업	치킨일레븐(중량치킨)	해당없음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가맹점 중앙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역세권, 중심가 등은 개별 지도 표시)	반경 설정 또는 별지에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만료전 180~90일 사이에 변경된 조건에 대한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라.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치킨일레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사.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가맹점 사업자는 타 지역의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에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악의적인 영업 방해 및 인접 지역 고객의 유도등, 공정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꾸준한 모니터링.**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가.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비 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해당 없음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 %	- %	- %	- %	

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비 고
2023	-	-	해당 없음

6. 계약의 기간,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치킨일레븐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갱신시에는 3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1.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2. 다.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3.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15일 이내
5.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6.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7.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8.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1년간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1년간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다. 계약 갱신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7조2항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7조2항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7조2항3호 가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7조2항3호 나목
○ [치킨일레븐]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7조2항3호 다목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조2항3호 라목

라.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제34조1항1호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의 표준화 및 메뉴 등의 판매가격 등을 위반하는 경우. 특히, 가맹본부가 지정한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1항2호
○ 가맹점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정기, 비정기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고도 교육 종료 후 30일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4조1항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예치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4조1항4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납부할 각종 비용을 1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년 이내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제34조1항5호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 내지 개점 승인을 위반하여 인테리어 설비의 통일성을 위반하거나 개별 사용하는 경우	제34조1항6호
○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34조1항7호
○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4조1항8호

- 2)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4조2항1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34조2항2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4조2항3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	제34조2항4호

손하여 가맹 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 (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2항5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34조2항6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34조2항7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34조2항8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34조2항9호

3)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 가맹본부가 약정한 상품, 자재의 공급 및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제34조3항1호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 지적재산권을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때	제34조3항2호
○ 가맹본부의 파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지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제34조4항

4)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잔여 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 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정보공개서 제공→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교육비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营业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가. 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치킨일레븐과 동종업종의 영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같은 시 단위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치킨일레븐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영허가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 닭고기 등을 굽거나 튀긴 형태로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허가 여부 통지→완료	(문의) 체인지원팀 02-858-1402

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치킨일레븐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17:00 ~ 익일 02:00	최소 26일 이상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심야영업시간대에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조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서면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청결도 확인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제품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매뉴얼 준수 및 사입 체크 →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완료	수시	
POS사용	담당자 매장 방문→POS사용 상태점검→가맹점방문기록표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수시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상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100%	-	광고 계획 공고 및 통보→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	
	상품광고 등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 부담액 제시→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본사)광고비의 70% / 가맹점사업자수]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 브랜드 및 상품광고와 공동판촉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의 양 당사자로서, 당사는 귀하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의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및 위약벌 사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당사가 계약 기간 내에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 등을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에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 종료 익일부터 위약벌로 1일 금일십만원(W100,000)씩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8항
위약벌 이외에 당사 또는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 2항
귀하가 본 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갑" 또는 "을"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최초가맹금의 10% 2.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최초가맹금의 30% 3.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최초가맹금의 50% 단, "갑"이 해당 점포의 내·외장 공사 등을 착수하였으나,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약벌과 별도로 투입된 점포 공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3항
귀하가 대금 결제의 규정을 약 체결 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u>자점매입한 금액 × 3</u> 을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4항
귀하가 제36조(비밀유지 의무) 또는 제37조(경쟁행위금지 의무) 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벌로 <u>금일천만원정(W10,000,000)</u>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5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8조 7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0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2-856-1402) 또는 방문	-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인터넷 홈페이지		1.영업개시이전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1차 상담	- 전화상담 / 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 정보공개 사항 검토 - 인근 가맹점 확인	14일 이상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계약서 검토	14일 이상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예치포함)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	
도면 작성	- 인테리어 / 별도 / 추가공사 도면협의	-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20일	
기자재 및 소품설치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교육	- 교육 - 아르바이트교육, 점주교육	10일	
오픈	- 오픈 리허설(담당자 판단 후 오픈결정) - 오픈행 행사(담당자 판단)	D-day	

* 상기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 1)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2) 당사자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d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전항의 규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점포환경 개선 요구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 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 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자금 시 절차>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 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VAT별도)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판촉지원	오픈일(D-day)기준으로	가맹점사업자	오픈일 전후	본부지원	소요되는 비용 전액

	D-1~D+1까지 매일3시간 동안 오픈 가맹점 인근에서 전단지,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3일간		당사 부담
--	---	--	-----	--	-------

3. 경영활동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별 시장조사 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가맹점 방문→ 가맹점 현황 분석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본부 부담	필요시
가맹점사업자	계약이행, 표준화, 가맹점 별 시장조사 판촉, 가맹점의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석 및 지도	가맹점사업자 특별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 서면 제시	가맹점사업자 부담	요청시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 액	신용상태	신용조건	비 고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가맹본부가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 고
해당 없음					

VI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교육 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치킨일레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신규교육	운영, 상품 교육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가맹계약체결 후 1 개월 이내	필수교육
	실 매장에서의 서비스 방법	실습교육		

* 상기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점 전 교육훈련 종료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귀하에게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치킨일레븐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간	비고
수시교육	가맹점통지사항 및 의견수렴	개별 또는 집단강의	개별협의	필수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 내용	개별교육		선택교육
재교육	가맹점관리 및 운영	개별교육		필수교육

2. 교육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원/VAT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10일	2,200,000원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재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3.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인) 및 기타인원(협의)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년도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주소지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서울		
2	인천		

3	대구		
4	부산		

2. 바로 전 사업년도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 고
해당 없음	

3. 바로 전 사업년도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해당 없음	

[별첨]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별첨 1] 주방기기 및 주방용품[필요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2] 원부자료 등 필수공급품목[초도물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3]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

인 적 사 항			
성 명		생 년 월 일	
자 택 주 소		전 화 번 호	

확인서1: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월 ()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2: 가맹계약서 제공확인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맹계약서를 ()월 ()일에 제공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3: 비밀유지확약

본인은 귀사의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제공확인서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분	매장명	소재지	연락처
1	별첨함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광역별 전체가맹점 별지 첨부]를 제공하였으며,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	---	---	--------	---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체인사업팀(02-856-140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bestfnb.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